

# 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〃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 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거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"허가"사항을 "신고"로 완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제16조제목, 제16조제1항, 제3항, 제4항 및 제5항, 제17조제목, 제17조제1항, 제19조제1항중 "허가"를 "신고"로 한다
- 나. 제16조제2항, 제17조제1항제3호, 제17조제2항, 제20조제3호, 제22조중 "허가"를 "신고수리"로 한다.

## 3.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평창군읍·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평창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목, 제16조제1항, 제3항, 제4항 및 제5항, 제17조제목, 제17조제1항, 제19조제1항중 "허가"를 "신고"로 한다

제16조제2항, 제17조제1항제3호, 제17조제2항, 제20조제3호, 제22조중 "허가"를  
"신고수리"로 한다.

제16조제1항중 "허가를 받아야"를 "신고를 하여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